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17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공시송달
2. 근 거: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시○	01.07.06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신청취소 결정	유선 연락 및 출석통지 2회 발송에도 상담에 응하지 않음. 1차 출석통지:21.5.10. 2차 출석통지:21.5.18.	수급자격 신청 직권 취소	폐문부재	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(이하생략)
2	오정○	98.05.13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신청취소 결정	유선 연락 및 출석통지 2회 발송에도 상담에 응하지 않음. 1차 출석통지:21.5.18. 2차 출석통지:21.5.28.	수급자격 신청 직권 취소	폐문부재	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 기간: 2021.06.17. ~ 2021.07.02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손지원(Tel. 031-8024-984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